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06 발의연월일: 2024. 9.27.

발 의 자:권향엽・이병진・이기헌

황정아 • 이학영 • 조계원

이수진 · 염태영 · 양부남

민형배 · 한정애 · 신정훈

서미화 · 김병주 · 전진숙

김성회 · 문금주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진상 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오는 10월에 해당 조사와 자료수집 분석 기간이 만료됨.

하지만,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전문가 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해외에 있거나 군사기밀자료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음. 이와 함께, 조사규명 신고기간이 짧아 희생자들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여수·순천 10·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 접수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쳤음. 실제로 전남 지역과 유족들이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하는사실 자체를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상규명 신고의 활성화 등을 홍보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년"을 "4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6개월"을 "2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령사업)"을 "(위령 및 홍보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 2. 제1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의 홍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 | ② |
|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 | |
| 터 <u>1년</u> 이내에 하여야 한다. | <u>4년</u>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 |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 |
| 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 | 집 및 분석) ① |
| 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 | |
| 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 | |
| 조사 개시일부터 <u>2년</u> 이내에 | <u>5년</u> |
|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 |
|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 | |
| 다.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
|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 |
| 종료되는 날부터 <u>6개월</u> 이내에 | <u>2년</u> |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 | |
| 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 |
|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 | |
| 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 | |

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위령사업) (생략)

<신 설>

- _____
- -----**.**
-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u>(위령 및 홍보사업)</u>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한 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

 보
 - 2. 제1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의 홍

 보